



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

[시행 2017. 9. 11.] [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3호, 2017. 9. 11., 일부개정]

한국정책방송원(기획편성부), 044-204-812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(이하"방송원"이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KTV 방송 및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행·조직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(이하"원장"이라 한다)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"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"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개정 2017. 09. 11.]

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 [개정 2017. 09. 11.]

1. KTV 방송프로그램 편성, 제작, 운행에 관한 사항
2.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. [개정 2013. 09. 30.][개정 2017. 09. 11.]

② 위원은 방송·신문·홍보·기관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부탁하여 맡게 한다. [개정 2010. 02. 10.][개정 2017. 09. 11.]

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위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. [신설 2010. 02. 10.][개정 2017. 09. 11.]

제4조(위원의 임기)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같다.

제5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하되,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[개정 2017. 09. 11.]

② 원장은 방송원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신설 2010. 02. 10.]

제6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기획편성부장이 담당한다. [개정 2013. 07. 15.]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,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. [개정 2010. 02. 10.]

1.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
2.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
3. 회의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

제7조(수당과 여비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[개정 2017. 09. 11.]

부칙 <제143호, 2017. 9. 11.>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1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규 명칭 변경)이 예규 명칭은 “KTV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”을 “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”으로 변경한다.